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16
----------	-------

발의연월일 : 2026. 3. 27.

발 의 자 : 김용태 · 김승수 · 조정훈
서천호 · 서명옥 · 송석준
정성국 · 배준영 · 서지영
조은희 · 정동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농어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업경영체가 농어업인인 경우에는 경영주 외의 배우자 등도 농어업인의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경영주로 등록하거나,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사항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어업인 배우자에 대한 경영주체로서의 지위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또한,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경영주는 경영주와 달리 지원 혜택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있었기에 제도 개선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농어업경영정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가족농가의 농어업종사자를 등

록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의 배우자인 농어업종사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권리 보장 및 농어업인 가족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제40조”를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족농가의 농업 종사자 및 제40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7조에”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어가의 어업종사자 및 제27조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등록 및 변경 절차와”를 “등록과 변경 절차, 공동경영주의 등록 및”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체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인 경우에는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배우자인 농업종사자 또는 어업종사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 ----- ----- ----- ----- ----- ----- -----.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1. ----- -----제24조 제1항에 따른 가족농가의 농업종사자 및 제40조----- ----- ----- ----- ----- ----- -----
2. 어업경영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	2. -----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어가의 어업종사자 및 제27조에-----

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 -----
<u><신 설></u>	<u>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 보를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체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인 경우에 는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가족 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인 농 업종사자 또는 어업종사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다.</u>
<u>②·③ (생 략)</u>	<u>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u>
<u>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 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 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u>	<u>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u> <u>-----등록과 변경</u> <u>절차, 공동경영주의 등록 및--</u> <u>-----</u> <u>-----</u> <u>-----</u>